



[2015.2.25.] [

202 , 2015.2.25.,

]

() 042 - 481 - 4864

- 1 () 「 」 「 」
- 2 () 「 」 (" ") 6 4 ,
(" ")
- 3 () 「 」 (" ") 7 3
(8 3 4)
1 ()
8 2 「 」
1 2
1
- 4 () 10 1
3
10 1 4
5
6
10 2 3
- 5 () 11
3 1 , 12 4
- 6 () 14 1 , (" ") 7
(" ") 가 「 」 36 1

1. ,
2. 12 1 2
3. 8
- 4.
5. 12 1 1
가. :

6. 「 」 ()
1 1
1 2

7 () • 6 1 9
") (" ") 10 ("
") , 11 12
• 1 •

- 1.
- 2.
- 3. • ()
- 4.

8 () 14 2 13
(, • 가 「 」 36 1

- 1. 가 : ()
- 2. 가 : ()
- 3. 가 :
가. ()
12 1 1 6 1 5

4. :
가. 8
• 6 2
• 1
• 가 , (" ")
가 • (移轉)
• .< [2014.12.30.>](#)

9 () 14 3
14

10 () 14 6 15
() •

11 () 17 1 1 23
30 16
()
1 , • 가 「
」 36 1

- 1.
 2. 6 1 ()
 3. 17 3
 - 4.
 5. 가 ()
 - 6.
- 17 3 • 6 2
• • 1

- 1.
- 2.
- 3.
4. , ()
• 가 12 1

- 1.
 2. 가
 3. 17 3 , 18 19 가 •
1. 가
2. 가
6

12 () 17 1 2 23
30
가 17 ()
•
1 , • 가
「 」 36 1

- 1.

2.

3.

4. 6 1 ()

5.

• 6 2 .

13 () 20 2 () 60
18 ()
1 1 , • 가 「
」 36 1

1.

2. 6 1 ()

3.

• 6 2 .

14 () 24 3 19 ,
20 , 21

15 () 16 1 22 .
1

1. ()

2. • 가

3.

16 () 29 1 3 " " 100
82

29 1 3 4

1. 29 1 3 가 :
가. 28 1

5

2. 29 1 3 :
가.

3. 29 1 4

:

가

가.

(既成)

가

15

,

가

29 2

가

,

29 1 3 4

「

」 9

.

”

”

”

,

” ” ” ”

17 ()

33 1

18 4

7

23

가

18 () 38 4

7

()

1.

2.

3. ()

4.

5.

6.

7.

8. . .

9.

10. 가

38 4

가

14

()

1.

2.

3.

4.

5.

6.

7.

8. . .

9. , 가

10.

11. 가
1 2

19 () 38 3
7 23
21 1 2 가

20 () 22 5 24

21 () 47 48
1

22 () 49
2

23 () 51 3
1

「 」

- 1. 51 1 3 :
- 2. 51 2 4 :
- 3. 51 5 6 :
2 1

.< 2012.6.8.>

- 1.
- 2.
- 3. 「 」

4. ()

가. 20

100 60

.가 10

100 50

5. ()

가. 7 100 60

.가 7 100 50

51

20

10

4

4

(實費)

24 () 「 」 28 5

25

. < 2012.7.12.>

25 (가) 54 1 가 29 1 1

가 90

1 가 3

() 가가 가

1 가 4 가 , 26

가 27 가 . .

가 「 가 」 72

가 ,

가 가 .

1 가 가 3 31 .

26 (가) 54 1 가 29 1 2 가

1 가 3

() 가가 가

1 가 5 가 , 28

가 29 가 가 . .

1 가 가 3 31 .

27 () 54 2

가 2 4

1. 25 가 90 가 20

2. 4 가 가

3. 3 가 가

80

4. 3 49

가 6 30

54 2 30

28 () 54 2

가 2 4

1. 26 1 가 90 가 20

2. 5 가 가

3. 3 가 가 80

4. 3 49 가 6 30
54 2 31

29 () 3 (3)

1. 21 : 2015 1 1

2. 22 : 2015 1 1

[[2014.12.30.](#)]

< 77 ,2011.2.1.>

1 () 2011 2 5 . , 18 20 24 2012 2
5

2 () 「 」
「 」

< 118 ,2012.6.8.>

< 120 ,2012.7.12.>

1 () 2012 7 15
2 ()
24 " 「 」 " " 「 」

4 6 " " " " " .
25 " " " " " .

< 190 ,2014.12.30.>

< 202 ,2015.2.25.>

1 ()

2 ()

1

2

1 2 , 2 2 1) 2)

1 2 , 2 2 2) 3)

1 2

2 2

가

1.1

가

: 2 2

1

2.2

가

: 2 2

2

[별표 1] <개정 2015.2.2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거나 저하시킨 경우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들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화재수리업자들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우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p>하거나 저하시킨 경우</p> <p>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p>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p>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p>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p>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p>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p> <p>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p> <p>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p>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p>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p> <p>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p>	법 제49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2) 석조건축물
 -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2만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만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라. 문화재감리업	3만원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별표 4]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문화재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문화재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5
2. 실측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10
4. 도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그 밖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교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